

도시계획시설(공원,유원지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원, 유원지, 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22일
서울특별시장

1. 결정취지

북한산국립공원 및 우이동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(공원)을 신설하고, 사업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, 도로)은 변경(폐지) 결정 하고자 함.

2. 도시계획시설(공원,유원지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공원	문화공원	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	-	증)11,561	11,561		

○ 결정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공원	신설	북한산 일대 역사·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식·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

○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유원지	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	124,393	감)2,707	121,686	건고제34호 (1968.1.15)	우이

○ 변경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유원지	감)2,707㎡	공원시설로 변경

다. 도시계획시설(도로)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폐지	소로	1	-	10	구획 도로	160	우이동 265	우이동 317	일반 도로	-	강북구고시 제1996-66호 (1996.11.6)	

○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1류	-	폐지	청소차량 진입을 목적으로 지정한 시설(도로)이나, 적환장 미설치로 유지 필요성 없음

라. 지형도면 : 불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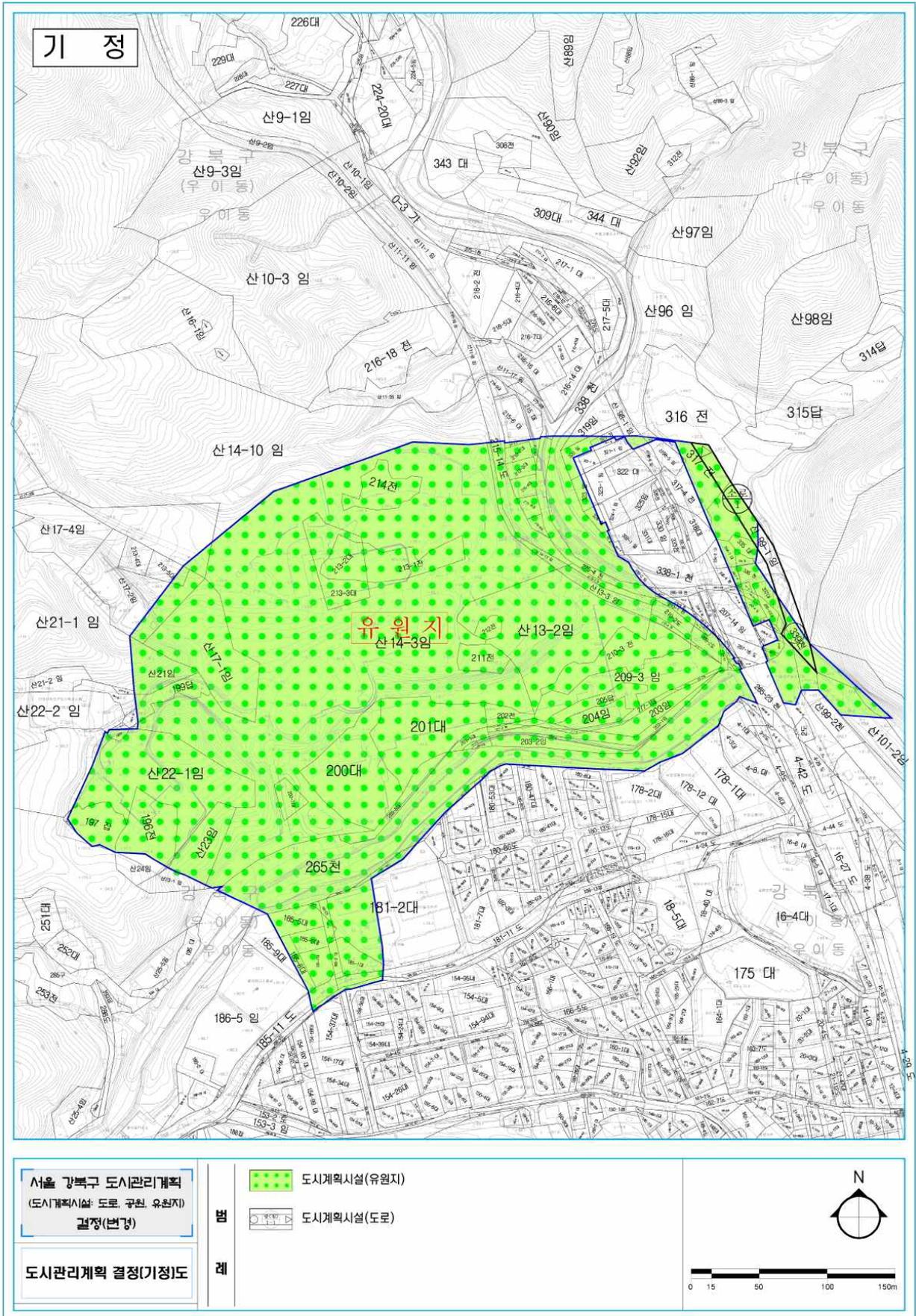
※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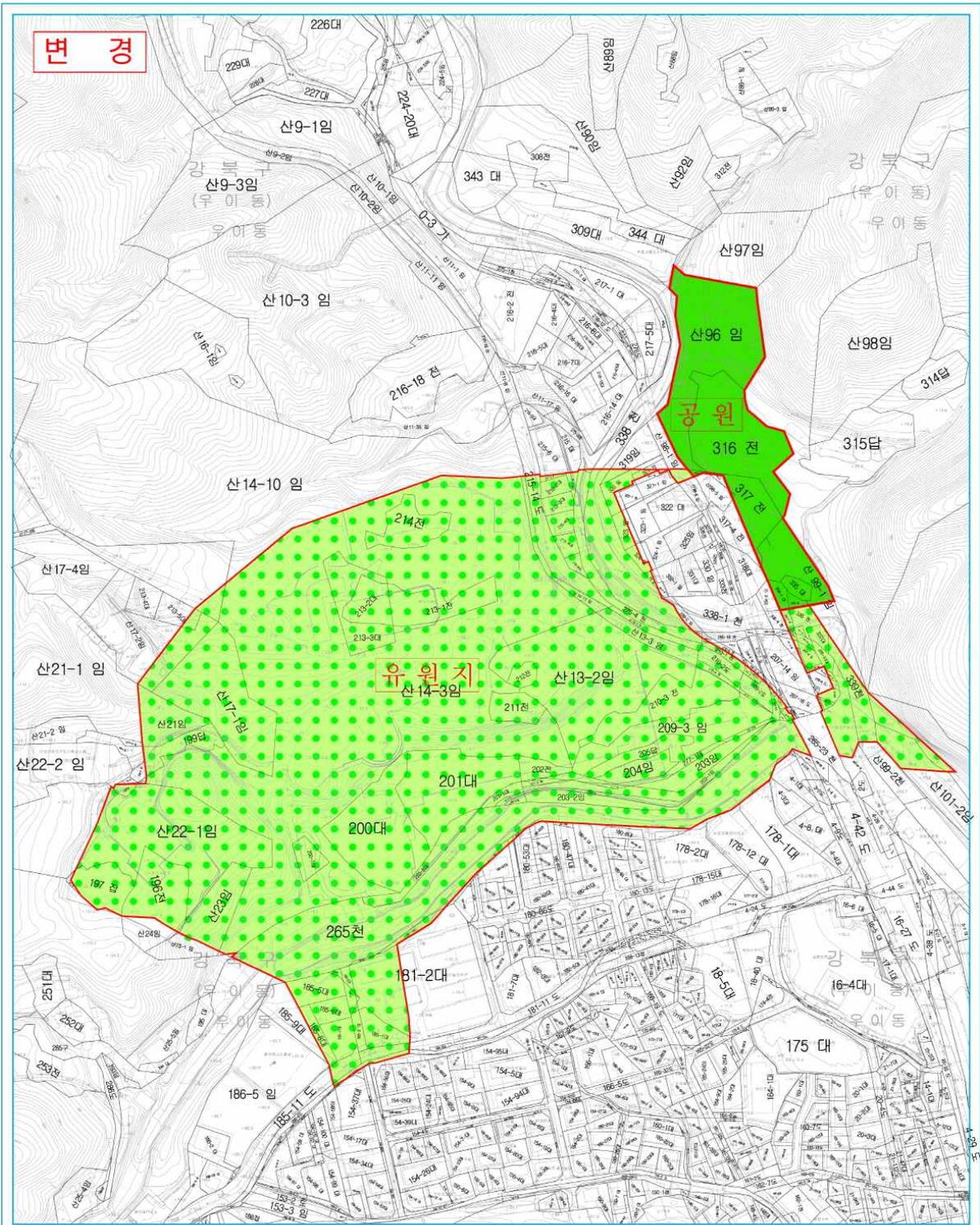
3. 열람장소

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 2133-8419),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(☎ 2133-8287) 및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☎ 901-6843), 공원녹지과(☎ 901-6923)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



변경

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계획
(도시계획시설: 도로, 공원, 유원지)
결정(변경)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- 범**
- 도시계획시설(공원)
 -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

례

